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여 수 시 보

시정지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좇은 정주화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공 고】

○여수시 공고 제2019-714호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3 ○여수시 공고 제2019-743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묘도 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 ○여수시 공고 제2019-744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공고 /12 ○여수시 공고 제2019-748호 도로지정공고(돌산읍 우두리 343-2번지) /13 ○여수시문수동공고제2019-12호 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5

람	회				
	람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0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1과 같다.

- ② 시장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

제21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 ①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매장일부터 30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3.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대상자
- 4.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 5.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변사자
- 6. 「의사상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7.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제32조(유골의 안치기간) ① 봉안당의 유골 안치기간은 안치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에 연장시청 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다시 하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골은 공설묘지 내 일정지역을 정하여 하동 매장항 수 있다.

제34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안 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별표 3)

- 3.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대상자
- 4. 「헌혈 및 장기기증 목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 5.「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6.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 ②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변사자의 봉안당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③ (생략) 〔별표 1)	제10조(사용료)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은 별지와 같다.
제21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 ① 공 설묘지 사용기간은 매장일부터 15년 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제21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 ① 대장일부터 30년으로 ② 제1항에 따른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일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시 사용하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2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제29조(사용료 감면)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32조(유골의 안치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5년씩 2회에	제32조(유골의 안치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생략)
- ④ (생략)

제34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안당 사용료의 50퍼센트 를 감면할 수 있다.

- 1. (생략)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법률 | 에 의한 국가유공자
- 3. (생략)
- 4. (생략)
- 5. (생략)
- 6. (생략)
- ② (생략)

일 3개월 이내에 다시 시장에게 사용 일 전까지 다시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기간만료

- ③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제34조(사용료 감면)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 공헌자(별표 3)
- 3.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1						별표	1					
7	분	적용	용 기준	일반시민	특례자	관외자	7	분	적	용 기준	일반시민	특례자	관외지
· ·	ı		[] [] 1기당	300,000	390,000	-		Э		지1기당 지1기당	600,000	780,000	-
공설묘지	사용료		mi/15년	180,000	270,000	-	공설묘지	사용료		시1기당 1㎡/30년	360,000	540,000	-
	관리비			120,000	120,000	-		관리비			240,000	240,000	_
자연장지	사용료	잔디형	묘지1기당 0.23㎡/40년	320,000	480,000	-	자연장지	사용료	잔디형	묘지1기당 0.23㎡/40년	320,000	480,000	-
A 2 6 A	Nom	수목형	묘지1기당 1.20㎡/40년	416,000	624,000	-	7267	N 6 E	수목형	묘지1기당 1.20㎡/40년	416,000	624,000	_
			l 네 이상 1구)	60,000	400,000	600,000			1	⊥ 세 이상 (1구)	60,000	400,000	600,00
			네 미만 1구)	42,000	126,000	189,000				세 미만 (1구)	42,000	126,000	189,00
화장시설	사용료	개	장유골	30,000	90,000	_	화장시설	사용료	개	장유골	30,000	90,000	_
			1구) 은 태아			04 500				(1구) 은 태아			04.50
봉 안 당	사용료		1구) 1구)/15년	21,000	63,000	94,500	봉 안 당	사용료		(1구) 1구)/15년	21,000	63,000	94,50
<u></u> 里丑	3						별표 :	3					
								훈기본	법의 희	생.공헌자 적 용	범위(제 <u>.</u> 대 상	29조각2.	호 관
							국가보 법률명	훈기본	법의 희 	적 용 전몰군경, 무공수훈지 도의용군인 자, 4·19 순직공무원 별공로순진	대 상 전상군경, ,, 보국수훈 닌, 참전유공 혁명부상지 닌, 공상공무 니자, 국가시 차회발전특별	29조각2. 순직군경, 공 자, 6.25참전 라자, 4·19혁 당, 4·19혁명 원, 국가사회 라회발전특별등 공로자, 지원	당상군경, 재일학 혁명사망 형공로자, 발전특 공로상이
							국가보 <u>법률명</u> 국가유공자	훈기본 ¹	지원에 관한	전 용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도의용군인 자, 4·19 순직공무운 별공로순직 자, 국가사	대 상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 자, 6.25참전 라, 4·19학 나, 4·19학명 원, 국가사회 라회발전특별당	당상군경, 재일학 혁명사망 형공로자, 발전특 공로상이
							국가보 법 률 명 국가유공자 법률	· 예우 및	지원에 관현	적 8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도의용군인 자, 4・19 순직공무원 별공로순조 자, 국가사 경, 지원순	대 상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 자, 6.25참전 라자, 4·19학 나, 4·19혁명 원, 국가사회 호회발전특별 공로자, 지원	당상군경, 재일학 혁명사망 형공로자, 발전특 공로상이
							국가보. 법 률 명 국가유공자 법률	훈기본 ¹ 예우 및 예우에 관한 1	지원에 관한 한 법률 법률	적 8 전몰군경, 무공수훈지 도의용군인 자, 4・19 순직공무운 별공로순조 자, 국가사 경, 지원순 순국선열, 중・장기록	대 상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 자, 6.25참전 라자, 4·19학 나, 4·19혁명 원, 국가사회 호회발전특별 공로자, 지원	상산군경, 재일학 혁명사망 영공로자, 발전특 공로상이 원공상군
별표 (신설							국가보. 법률명 국가유공자 법률 독립유공자 제대군인 지 보훈보상대상	· 예우 및 예우에 관한 1원에 관한 1	지원에 관한 한 법률 법률	적 8 전몰고경, 무공수훈지 도의용군인 자, 4・19 순직공무운 별공로순조 자, 국가사 경, 지원순 순국선열, 중・장기통 재해사망군 원, 재해부	대 상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자, 6.25참전 자, 6.25참전 라자, 4·19혁명 원, 국가사회 회발전특별: 공로자, 지원	상산군경, 재일학 혁명사망 영공로자, 발전특 공로상이 원공상군
							국가보. 법률명 국가유공자 법률 독립유공자 제대군인 지 보훈보상대상 참전유공자 관한 법률	· 예우 및 예우에 관한 1 자 지원에 관한 1 다 예우 및 의중 등 5	지원에 관한 한 법률 법률 한 법률	적 용 전몰고경, 무공수혼자 도의용군인 자, 4・19 순직공무운 별공로순조 자, 국가사 경, 지원순	대 상 전상군경, 가, 보국수훈 기, 참전유공 혁명부상지 기, 공상공무 기자, 국가시 가회발전특별 지군경 애국지사 등무 제대군당 경, 재해부성 상공무원 라공자, 월남	순직군경, 공자, 6.25참전 자, 6.25참전 라자, 4·19혁명 원, 국가사회 회발전특별: 공로자, 지원	당상군경, 재일학 혁명사망 성공로자, 발전특 왕로상이 현공상군
							국가보. 법률명 국가유공자 법률 독립유공자 제대군인 지 보훈보상대상 참전유공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 단채설립에 된	· 예우 및 예우에 관한 1 원에 관한 1 명이 관한 법률	지원에 관한 한 법률 한 법률 단체 설립이	전 용 전몰고경, 무공수혼자 도의용군인 자, 4・19 순직공무운 별공로순직 자, 국가사 경, 지원순 산국선열, 중・장기복 재해사망군 원, 재해부 1 6.25참전유	대 상 전상군경, 가, 보국수훈경, 가, 보국수훈경이 학명부상자 님, 공상공무니자, 국가시 가회발전특별 직군경 애국지사 축무 제대군인 상공무원	순직군경, 공자, 6.25참전 자, 6.25참전 가, 4·19혁 원, 국가사회 남회발전특별 공로자, 지원 당군경, 재해/	당상군경, 재일학 혁명사망 성공로자, 발전특 용로상이 현공상군

[별표 1]

<u>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0조제1항</u> 관련)

(단위 : 원)

구 15	구 분		적용 기준		특례자	관외자
	계			600,000	780,000	_
공설묘지	사용료		지1기당 1㎡/30년	360,000	540,000	_
	관리비			240,000	240,000	_
TIOUTLT	1107	잔디형	묘지1기당 0.23㎡/40년	320,000	480,000	_
자연장지	사용료	수목형	묘지1기당 1.20㎡/40년	416,000	624,000	_
	사용료	15세 이상 (1구)		60,000	400,000	600,000
키자니서		15	세 미만 (1구)	42,000	126,000	189,000
화장시설		개장유골 (1구)		30,000	90,000	_
		죽은 태아 (1구)		21,000	63,000	94,500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120,000	500,000	_

[별표 3] 신설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29조각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 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 무공로자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묘도 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4. 1.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19. 3. 18.

여수시장(인)

- 1.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묘도 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내역별첨
- 4. 열람장소 : 여수시청 게시판
-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9. 3. 18. ~ 2019. 4. 1.(15일간)
- 6. 의견서 제출처 : 여수시청 도로과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 (☎ 061-659-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내용

○ 토지

소재지		기묘 지적					관 계 인 관계인의권리			
동(면)	지 번 (당초지번)	기 ^{시 즉}		(m²)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비고
			390	390		14명		1명		
			36중 1/4	36중 1/4	여천시 묘도동 1**1	김동*				사망
묘도동	912-3	도	36중 1/4	36중 1/4	여천시 묘도동 1*0*	김용*				사망
五工名	(912-3)	工	36중 1/4	36중 1/4	여천시 묘도동 10**	김준*				사망
			36중 1/4	36중 1/4	여천시 묘도동 13**	김지*				사망
묘도동	912-5 (912-5)	도	2	2			k-101 W=10			
묘도동	912-6 (912-6)	도	3	3	여수시 묘도동 90*-*	설정*	순천시 연향동 1*7* 현대아파트 10*동 1*1*호	이 재*	가압류	
묘도동	912-11 (912-4)	대	91	91			10 0 1 1 ==			
묘도동	915-2 (915-2)	도	33	33	여천군 삼일면 묘도리 1*2*	김익*				사망
묘도동	919-2 (919-2)	도	99	99	여천군 삼일면 묘도리 1**1	김동*				사망
묘도동	919-3 (919-3)	도	17	17	여천시 묘도동 1**1	김정*				사망
묘도동	919-4 (919-4)	도	12	12	역선시 묘모당 1**1	선생*				718
			9중 5/12	9중 5/12	여수시 묘도1길 2*-1*	강숙*				
묘도동	949-6	대	9중 3/12	9중 3/12	여수시 묘도동 94*	김종*				
11.1.0	(949)	91	9중 2/12	9중 2/12	여수시 광무7길 2*	김종*				개명 김동*
			9중 2/12	9중 2/12	여수시 신기동 13* 대림사택 2*-30*	김종*				
묘도동	983-2 (983-2)	도	33	33	여천군 삼일읍 묘도리 1*2*	김희*				사망
묘도동	1451-2 (1451-2)	도	83	83	여천군 삼일면 묘도리 1*4*	김성*				사망
묘도동	1452-3 (1452-3)	도	10	10	여천군 삼일읍	허봉*				사망
묘도동	1452-4 (1452-4)	도	7	7	묘도리 1*5*	<u>ा</u> ठ ४				, √ι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수산업법」제1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연장 허가	어업의 종류	면적	어장	면허기간	연장허가	수산자원 조성금	어 업 권 자		비고	
번호	번호	(양식방법)	(ha)	위치		기 간	소 (천원)	주 소	성 명	٥١٠	
11218	2019– 07	패류양식 (비닥식)	10	화정 여자	2009.04.19. 2019.04.18.	2019.04.19. 2029.04.18.	1,000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52, 104동 1302호(신기동, 우림필유아파트)	이영천		
11219	2019– 08	패류양식 (비닥식)	15	화정 여자	2009.04.19. 2019.04.18.	2019.04.19. 2029.04.18.	1,500	"	이영천 외 1명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19. 3. 18.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19 - 748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343-2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겨	계		1.3m	50 m²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우두리	343-2 번지	38m	1.3m	50 m²	u u					
	이 하 빈 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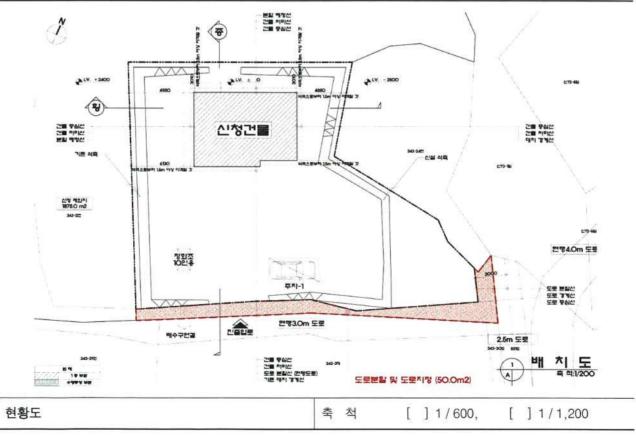
여 수 시 장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공시 송달

- □ 성명: 이**
- □ 주소 또는 거소: 여수시 문수북2길 19, 302호
- □ 서류의 명칭: 이륜차법규위반 과태료
- □ 서류의 내용: 붙임
- □ 공고일자: 2019. 3. 18.~ 2019. 4. 1.(15일간)

위 고지서를 귀하에게 2019년 3월 15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가상계좌 및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2019년 4월 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8일

문 수 동 장 ❷

※문의처: 여수시 문수동 주민센터(061-659-1494)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원)

과세번호	성명	주소	세액	공시송달사유
4012001041000215200	OL OH	전남여수시 문수북2길	400.000	수취인 불명
4613021941000315328	이*영	19, 302호	400,000	반송